

성주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

1. 제 안 자 : 도회재 의원 외 6인

2. 제정 이유

-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를 통한 교육도시 실현을 위해 학생들의 교복구입비를 지원하여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및 지역 주민 자긍심 고취

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, 용어의 정의(안 제1조 ~ 안 제2조)
- 나. 지원범위, 대상 지원금액(안 제3조 ~ 안 제5조)
- 다. 지원절차 및 환수(안 제6조 ~ 안 제7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교육기본법」, 「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」
- 입법예고 : 의견없음(2022. 8. 23. ~ 8. 29.)

5. 검토의견

- 본 제정조례안은 교복구입비 지원을 통한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 경감으로써 평등한 교육복지 실현과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
- 교복구입비 지원의 목적, 지원범위, 대상 지원금액, 지원절차 및 환수 등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.
- 법리 검토 결과, 관련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하며, 성주군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본 조례를 제정·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